투자권유준칙

2009.01.30 제 정
2010.12.31 개 정
2012.04.02 개 정
2014.05.16 전면개정
2016.11.01 개 정
2017.03.07 개 정
2018.01.26 개 정
2018.11.01 개 정
2021.05.17 개 정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일반금융소비자(단,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도 포함)가 판매회사(판매대리•중개업자 포함)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등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1 편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 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 50 조제 1 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 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 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총칭하여 "투자자" 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

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 3 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 3 조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③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가. 금소법시행령 제 12 조 제 1 항 제 2 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나. 금소법시행령 제 12 조 제 1 항 제 3 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제 3 조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 등은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편 투자자의 구분 등

제 4 조 (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법 제 9 조 제 5 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제 3 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6 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 호]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 120 조제 1 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 132 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 7 조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 1 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 11 조제 5 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 10 조 및 제 11 조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③ 임직원은 제 2 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4-1 편 투자자정보

제 8 조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 1 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 1 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 2 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 3 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⑤ 임직원 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 1 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 9 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 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제 1 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연 1 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 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 4-2 편 투자권유

제 10 조 (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 2 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 호]의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 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 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⑤ 임직원 등은 제 1 호의 투자자에게 제 2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5 호]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2.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⑥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 17 조제 2 항 또는 제 1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① 회사는 만 65 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 세 이상을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하며,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0 조 제 1 항에 따른 [별지 제 2 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 8 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65 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삭제>

제 13 조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3) 신탁계약

(가) 법 제 103 조제 1 항제 1 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나) 법 제 103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1)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2) 선도,스왑,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 3 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 174 조, 제 176 조 또는 제 178 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1. 금소법 제 17 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2.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 2. 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영업점 책임자(회사 영업점 전결규정에 따라 지점장 등 책임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온라인거래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사후확인 절차 등을 거칠 수 있음)

②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확인서 징구건수, 확인서 징구건 중 민원발생 건수 등

제 4-3 편 설명의무

제 14 조 (설명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 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④ 임직원등은 제 1 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임직원등은 제 1 항부터 제 4 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 123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 ·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⑦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 19 조 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⑧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가.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⑨ 임직원등은 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 15 조 (외화증권 등에 의한 설명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4 조 1 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에는 제 14 조 제 1 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 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제 15 조의 2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2.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3.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4.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5.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6. 사채의 순위

② 임직원 등은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해 설명할 때에는 [별지 제 6 호] 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상품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 5 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 16 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 3 호]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 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3 가지 색상(적색, 황색,녹색)으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인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⑥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 6 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 17 조의 1. (계약서류의 교부)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 17 조의 2. 청약의 철회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 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 37 조제 2 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제 17 의 2 및 제 17 의 3 에서 '서면등' 이라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금소법제 23 조에제 1 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나. (금소법제 23 조에제 1 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①-1.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 17 조의 2 에서 '금전등' 이라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2.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①-3.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청약철회기간 부여 예시

구 분	T	T+1	T+2	T+3	T+4	T+5	T+6	T+7	T+8
적용	**신규 가능**	**신규 불가**(청약철회 기간)							발행일
비적용	**신규 가능**(청약철회 불가)								발행일

② 법 제 72 조제 1 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 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 37 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소법제 23 조에제 1 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나. (금소법제 23 조에제 1 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②-1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2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④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 17 조의 3. 위법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 17 조(적합성 원칙)제 3 항, 제 18 조(적정성 원칙)제 2 항, 제 19 조(설명의무)제 1 항・제 3 항, 제 20 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 1 항 또는 제 21 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 9 조 제 22 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② 투자자가 제 1 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 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 47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 47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④ 회사는 제 2 항, 3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8 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 103 조 제 3 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

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 19 조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 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자기매매 등을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 3 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부당한 권유 금지

1.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법 제 55 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 71 조(불건전영업행위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 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9.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로보어드바이저”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의미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7 의 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 99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 4-73 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 1 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 1 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 21 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 1 호 및 제 2 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 3 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 22 조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 1-2 호]의 (투자일임·금전신탁관련)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임직원등은 제 1 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 2-2 호] 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2.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3. 제 1 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 23 조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①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별지 제 7 호]

③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 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 24 조 참조)를 10 년 또는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 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 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2년 04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7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8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준칙의 시행일 이전에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준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준칙은 2018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21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 해당 항목에 V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유형 (개인법인구분)

□ 개인 □ 법인

■ 투자자 구분

□ 전문금융소비자 □ 일반금융소비자

■ 투자권유 희망여부

□ 투자권유 희망 (정보제공 필수)	
□ 투자권유 희망하지 않음	□ 투자정보제공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등록구분

□ 기존정보와 동일	**□ 신규(또는 정보변경)**

■ 투자성향 분석정보

PART 1 [기초정보]			
개인		**법인**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 세 이하 ② 만 20~30 세 ③ 만 31~54 세④ 만 55 세~64 세 ⑤ 만 65 세	1	법인고객님의 자본금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총자본금기준) ① 200 억 이상 ② 100~200 억 미만 ③ 50 ~100

	이상		억 미만 ④10~50 억 미만 ⑤10 억 미만
2	고객님께서 투자하실 자금의 투자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6 개월 미만 ② 6 개월~1 년 미만 ③ 1 년~2 년 미만 ④ 2~3 년 미만 ⑤ 3 년 이상		
3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가능) ①은행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②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④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신용도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율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⑤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4	고객님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전혀없음 ② 1 년미만 ③ 1 년이상~3 년미만 ④ 3 년이상~5 년미만 ⑤ 5 년이상		
5	고객님의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채무상환 ② 생활비 ③ 주택마련 ④ 여유자금 ⑤ 자산증식		
6	고객님은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②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③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④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7	고객님께서 투자수익,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②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③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8	다음 중 고객님의 자산규모(순자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 억미만 ② 1 억이상~2 억미만 ③ 2 억이상~5 억미만 ④ 5 억이상~10 억미만 ⑤ 10 억이상	8	법인고객님의 연매출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 억미만 ② 10 억이상~50 억미만 ③ 50 억이상~100 억미만 ④ 100 억이상~200 억미만 ⑤ 200 억이상
9	다음 중 고객님의 향후 수입원(예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것입니까? 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10	다음 중 고객님께서 기대하는 이익 수준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원금기준 10% 범위 ② 원금기준 20% 범위 ③ 원금기준 30% 범위 ④ 원금기준 50% 범위 ⑤ 원금기준 100% 범위		

11	다음 중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원금기준 -10% 범위 ② 원금기준 -20% 범위 ③ 원금기준 -30% 범위 ④ 원금기준 -50% 범위 ⑤ 원금기준 -100% 범위
임직원 판단 및 기입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아래 항목에 해당되면 표시) ☐ **Yes** ☐ **No** ☐ 만 65 세이상 투자자 ☐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상품 투자 미경험자 ☐ 문맹자 ☐ 기타( )	
고객님께서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투자기간 (개월)	

■ 투자자 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 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일 자 :
성 명 : (인/서명)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성 명 : (인/서명)

■ 취약한 금융소비자 설명확인

▶금융감독원의「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라 금융정보취약계층(만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하시고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신 고객께서는'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에 대해 다른 정보 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①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십니까?

☐ 만65세 이상 ☐ 은퇴자 ☐ 주부 ☐ 불이익사항 우선설명 요청 고객

②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 들으셨습니까? ☐ 예 ☐ 아니오

③ 금융소비자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 들으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동의하지 않음

금융소비자 불이익 사항은 우선설명이 아닌 상품 가입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설명됨을 안내 받으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음**

■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해 주십시오 / 고령자 투자유의상품 투자포함)

적합(적정)성 진단결과	**투자자 성향**	**( )**
	금융투자상품의위험등급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 (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초고위험 (1 등급)	고위험 (2 등급)	중위험 (3 등급)	저위험 (4 등급)	초저위험 (5 등급)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 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8 조)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투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 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직원은 투자자가 "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거래가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성 명 : (인/서명)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성명 : (인/서명)

■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해주십시오)

고령투자자(만65세이상) 및 초고령투자자(만80세이상) 조력자 정보			
고령자/초고령자 조력자정보	가족성명: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접수방법: □창구 □유선 □없음	유선접수자:	유선시간:
	※ 상기 제공된 대리인 개인식별 정보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함 [거래종료 후 5년 (단,금융사고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자본시장법 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보관)]		
초고령투자자 조력자 확인	▶ 위 상품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가족 _____ (인/서명)		
	▶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이해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관리직원 _____ (인/서명)		
	□ 없음		

■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 확인란

설명내용 고객 확인사항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 교부를 거부)

2. 상품의 내용, **핵심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등), 원금손실가능성(예금자보호법적용대상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 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 듣고 이해하였음 **)**

※ 밑줄친 부분 고객 자필 기재

*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현금예수금(위탁자예수금•수익자예수금), 신용공여담보금 등 일부 담보금 비과세종합저축 등 저축자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임.

성 명 : (인/서명)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성명 : (인/서명)

■ 대리인 정보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위임자)과의 관계
위임내용	□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정보확인 □ 일반금융소비자 [투자권유 불원/ 정보미제공] 확인 □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 □ 기타( )	
본인은 상기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내용에 대한 제반 절차의 수행을 위임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본인(위임인) : (인 / 서명)		

<별지 제 1-2 호>

(투자일임·금전신탁관련)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금융투자업규정」제 4-77 조 및 제 4-93 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 또는 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 유형 (개인법인구분)

□ 개인 □ 법인

■ 투자자 구분

□ 전문금융소비자 □ 일반금융소비자

■ 등록구분

□ 기존정보와 동일 □ 신규(또는 정보변경)

■ 투자성향 분석정보

개인		법인	
1	고객님의 연소득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5 천만원 이하 ② 5 천만원~1 억원 이하 ③ 1 억원~2 억원 이하 ④ 2 억원 초과	1	법인고객님의 연매출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5 억원 이하 ② 5 억원~10 억원 이하 ③ 10 억원~20 억원 이하 ④ 20 억원 초과
2	계약기간이 반 이상 남은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1~2개월동안) 예상 손실한도를 넘어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① 포트폴리오 모두 환매 ② 포트폴리오 일부 환매 ③ 관망 ④ 신규 투자자금 추가 불입 ※ 본 문항은 투자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실제 환매를 원하는 경우 영업점을 통한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3	고객님의 투자목적은 어느 것입니까? ①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②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③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실현 ④ 적극적 매매를 통항 수익 실현 목적 ⑤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 투자자 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일임/금전신탁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연소득 현황, 투자목적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3 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일 자 :
성 명 : (인/서명)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성명 : (인/서명)

■ 대리인 정보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위임자)과의 관계
본인은 상기 대리인으로 하여금 투자일임/금전신탁 투자자정보 작성에 관한 행위을 위임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본인(위임인) : (인 / 서명)		

<별지 제 1-3 호>

(신용공여)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일반금융소비자)를 파악하여 고객이 신청하신 신용공여 상품이 적합·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당 항목에 V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유형 (개인법인구분)

□ 개인	□ 법인

■ 투자자 구분

□ 전문금융소비자	□ 일반금융소비자

■ 적정성 판단보고서 수취 여부

□ 희망	□ 불필요

■ 등록구분

□ 기존정보와 동일	□ 신규(또는 정보변경)

■ 투자성향 분석정보

PART 1 [기초정보]			
개인		법인	
1	1. 신용거래 □ 주식 매수 □ 주식 대주 1. 담보대출 □ 금융투자상품 매수 □ 가계자금 □ 법인자금 □ 기타		
2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 세 이상~만 30 세 이하 ② 만 31~50 세 이하 ③ 51~64 세 이하④ 만 65 세~79 세 이하 ⑤ 만 80 세 이상		
3	고객님의 자산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 억미만② 1 억이상~5 억미만 ③ 5 억이상	3-1	총 자본금을 어떻게 되십니까? ① 50 억미만② 50 억이상~100 억미만 ③ 100 억

	~10 억미만 ④ 10 억이상		이상~200 억미만 ④ 200 억이상
4	고객님의 연간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3 천만원 미만 ② 3 천만원이상~5 천만원미만 ③ 5 천만원이상~1 억미만④ 1 억이상		
5	고객님의 부채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 억미만 ② 1 억미만~5 억미만 ③ 5 억이상 ~10 억미만④ 10 억이상		
6	고객님의 고정지출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3 천만원 미만 ② 3 천만원이상~5 천만원미만 ③ 5 천만원이상~1 억미만④ 1 억이상	6-1	연간 순이익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현재 연간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성 ②현재 연간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③현재 연간 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7	신용점수 _____점		
8	고객님의 변제계획에 가장 가까운 항목은 어느것입니까? ① 매도상환 ② 근로소득 ③ 임대소득 ④ 연금소득 ⑤ 사업소득 ⑥기타소득		

■ 투자자 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일임/금전신탁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연소득 현황, 투자목적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3 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일 자 :
성 명 : (인/서명)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성명 : (인/서명)

■ 대리인 정보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위임자)과의 관계
본인은 상기 대리인으로 하여금 투자일임/금전신탁 투자자정보 작성에 관한 행위를 위임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본인(위임인) : (인 / 서명)		

<별지 제 2 호>

적합성판단기준

□ 문항별 배점

○ 1 번: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4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5 점, ④로 응답한 경우 3 점, ⑤로 응답한 경우 2 점

○ 2 번: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⑤로 응답한 경우 5 점

○ 3 번: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⑤로 응답한 경우 5 점 (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 번: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⑤로 응답한 경우 5 점

○ 5 번: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⑤로 응답한 경우 5 점

○ 6 번: ①로 응답한 경우 3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 7 번: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 8 번: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⑤로 응답한 경우 5 점

○ 9 번: ①로 응답한 경우 3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 점

○ 10 번: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⑤로 응답한 경우 5 점

○ 11 번: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⑤로 응답한 경우 5 점

□ 점수 계산 방법

○ 1 번부터 11 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50 점)하고, 이를 100 점으로 환산

(예) 1 번부터 11 번까지의 합이 30 점인 경우, 30 점/50 점 × 100 = 60 점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 단계로 분류

· 20 점이하: 안정형
· 20 점초과 ~ 40 점이하: 안정추구형
· 40 점초과 ~ 60 점이하: 위험중립형
· 60 점초과 ~ 80 점이하: 적극투자형
· 80 점초과: 공격투자형

<별지 제 2-2 호>

<투자자 유형 분류 기준>

1. 문항별 배점

○ 1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4 점

○ 2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 3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⑤로 응답한 경우 5 점

2. 투자일임계약 시 투자성향 분류

○ 1 번부터 3 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

□ 3 점이상 ~ 5 점이하 : 투자성향 한단계 하락

□ 6 점이상 ~ 9 점이하 : 투자성향 유지

□ 10 점이상 ~ 13 점이하 : 투자성향 한단계 상승

3.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투자자유형 분류

구분		위험감내도 (투자기간 등)				
		단기 (6 개월이내)	중단기 (6 개월~1 년이내)	중기 (1 년~2 년이내)	중장기 (2 년~3 년이내)	장기 (3 년이상)
투자성향	초고위험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위험중립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고위험 (다소높은위험)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중위험 (보통위험)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저위험 (낮은위험)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초저위험 (매우낮은위험)	안정형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 점수 계산 방법

○ <별지 제 1 호>에 의해 분류된 투자성향에서 <별지 제 1-2 호>에 의해 파악된 정보를 고려하여 <별지 제 2-2 호>의 1, 2 에 따라 투자성향을 재분류하고, <별지 제 2-2 호>의 3.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투자자유형 분류를 고려하여 최종 투자자유형을 분류함.

(예) 투자자성향 적극투자형, 투자일임성향 10 점, 투자기간 단기인 경우

- 투자일임성향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투자자 유형 분류 = 공격투자형 → 위험중립형

※ 최종 투자일임계약성향 : 위험중립형

<별지 제 3 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초고위험
(1 등급)
(Speculative Risk)</th><th>고위험
(2 등급)
(High Risk)</th><th>중위험
(3 등급)
(Middle Risk)</th><th>저위험
(4 등급)
(Low Risk)</th><th>초저위험
(5 등급)
(Ultra Low Risk)</th></tr>
<tr><td colspan="2">투자자성향</td><td colspan="2">공격투자형</td><td>적극투자형</td><td>위험중립형</td><td>안정추구형</td><td>안정형</td></tr>
<tr><td colspan="2">집합투자증권</td><td>매우높은위험
(1 등급)</td><td>높은위험
(2 등급)</td><td>다소높은위험
(3 등급)</td><td>보통위험
(4 등급)</td><td>낮은위험
(5 등급)</td><td>매우낮은위험
(6 등급)</td></tr>
<tr><td colspan="2">채 권</td><td colspan="3">투기등급 포함(BB 이하)</td><td>회사채
(BBB+~BBB-)</td><td>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A-이상)</td><td>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td></tr>
<tr><td rowspan="2">파생결합증권</td><td>ELS
DLS</td><td colspan="3">원금비보장형</td><td colspan="2">원금부분보장형</td><td></td></tr>
<tr><td>ELW</td><td colspan="2">ELW</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주식</td><td colspan="2">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td><td>주 식</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장내파생</td><td colspan="2">선물옵션</td><td colspan="4"></td></tr>
</table>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6 단계로 분류
* 회사 내부정책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손익구조, 시장상황 등 위험요인을 참고하여 위험등급과 각 등급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상세내역을 정할 수 있음. (아래 예시 참조)
* ELF 의 경우 ELS 와 동일하게 투자위험도 분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평가 고려요소 (예시)

□ 위험도 책정 및 조정 시 참고할만한 **정량적 요소**

	구 분	설 명
정량적 요소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환율변동위험 포함)	과거 3년간의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며 표준편차, VaR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를 참고 할 수 있음
	원금손실가능 정도	만기일까지의 투자원금 보장 정도로 100%보장형과 부분보장형, 비보장형 등으로 구분
	신용등급	발행자가 국내일 경우 채권평가사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을 참고하고, 해외의 경우 해외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및 국가신용등급을 고려할 수 있음. 국가별 신용평가 업무 수준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 가능
	잔존만기	채권의 경우 수정듀레이션을 고려하며 클수록 위험도를 높게 책정
	파생상품의 편입비율	파생상품의 편입정도가 높을수록 위험도를 높게 책정
	위험조정 성과척도	정보비율 (IR), 벤치마크 민감도, 트레킹 에러, 젠센의 알파, 샤프지수, 트레이너 지수 등

□ 위험도 책정 및 조정 시 참고할만한 **정성적 요소**

	구 분	설 명
정성적 요소	상품의 구조	상품의 구조가 단순하거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조정
	거래상대방 위험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조정
	수익률 계산의 명료성	수익률 산정방법이 복잡할수록 위험도를 높게 조정
	이해의 난이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높은 위험도로 조정
	구조화된 상품에 대한 특정위험	만기이전 조기상환 가능성 여부 등 감안
	유동성 요소	펀드의 유동성이 낮을수록 위험도를 높게 조정
	펀드 형태	적립식 혹은 거치식인지 등을 감안

* 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에 따라 구분한 투자자성향과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라 구분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투자권유를 함.

<별지 제 4 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Middl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별지 제 5 호>

적합성 보고서

▣ 고객정보

고객명:	계좌번호:

▣ 투자정보 확인서 및 문항별 응답결과

1. 고객연령:	2. 투자예정기간:
3. 투자경험	4. 금융지식수준/이해도
5. 투자목적	6. 재산상황
7. 기대이익 및 감내할수 있는 손실	
8. 기타특이사항: 직원 직접 기재(선택)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형	예)고객님의 투자성향은 성장형입니다. 성장형은 투자에서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 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 상품	(예) ○○증권 제×××회 파생결합증권

▣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투자권유사유	예) 고객이 상품 선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일부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더라도 연 5% 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한 상품을 희망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투자권유가 가능한 상품 중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 파생결합증권을 추천하였음 ※ 투자자 수요를 감안하여 해당상품을 선정한 핵심적 사유를 기술 (100자 이상)
핵심유의사항	예) 6개월 마다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최대 3년간 자금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자금운용계획을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고객의 구체적 상황(재무상황,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에 따라 각별히 유념 하여 할 사항(기초자산 및 상품의 손익구조 등)이나 불이익 (과표소득 증가 등)을 기재

	(60자이상)

▣ 참고사항

1.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리딩투자증권 지점/부서명) _____(담당자) _____(인/서명)

<별지 제 5-1 호>

적정성 보고서

▣ **고객정보**

고객명:	계좌번호:

▣ **고객정보 확인결과**

1. 고객연령:	2. 투자예정기간:
3. 투자경험	4. 금융지식수준/이해도
5. 투자목적	6. 재산상황
7. 기대이익 및 감내할수 있는 손실	
8. 기타특이사항: 직원 직접 기재(선택)	

*신용공여의 경우: 대출용도,신용점수,변제계획 등 항목 적용

▣ **고객의 투자상품**

종목분류	☐ 신용공여 ☐ 파생상품 등(수익증권 제외) ☐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상품 위험등급	

▣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고객성향	
투자가능 상품등급	
고객의 적정성 판단결과	☐ 적정 ☐ 부적정

▣ 참고 사항

ㅇ 동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신용공여)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ㅇ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작성일자 : 년 월 일

<별지 제 6 호>

조건부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예시)]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특정한 사유(예시: 부실금융기관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 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가 특정한 사유(예시: 경영개선권고등)에 해당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의 만기는 장기(예시:30년이상)이며, 만기 도래한 경우 별도의 통지나 공고 없이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생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예시:5년등)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않습니다.

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특약에 의거 파산절차, 청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모든 후순위채권자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 판단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금융상품은 OO신용평가, OO신용평가등으로부터 OO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 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예시)]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 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특정한 사유(예시: 부실금융기관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본 금융상품의 만기는 장기(예시: 5년이상)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③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생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예시:5년 등)이내에 중도상환되지 않습니다.
   ④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⑤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판단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금융상품은 OO신용평가, OO신용평가 등으로부터 OO등급을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 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 7 호>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예시)

1.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4.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 · 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 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문인력 개입관련 정책에 따라 “5.”는 표기 생략 가능)

<별지 제 8 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1.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ㅇ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

-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2. 고령투자자의 정의

ㅇ 회사는 65 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 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3.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ㅇ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투자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 고령투자자가 신규로 내점하는 경우 가급적 해당창구를 이용하도록 먼저 안내해야 하나, 고객이 특정 직원과 상담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나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창구의 수는 지점 규모나 인력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고령투자자 이외의 투자자도 이용 가능하다.

▸ 전담창구에는 나중에 고령투자자 또는 보호자와 분쟁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녹음·녹화시설 등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전담창구 배치직원은 다양한 고객층을 접해본 경험이 필요하므로 2 년 이상의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한다.

▸ 전담창구에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지점 업무를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팀장은 배제 필요

▸ 고령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자제

※ 사리분별능력은 아래 예시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ㅇ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3)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ㅇ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영 제 3 조의 3 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등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

* (투자권유 유의상품 예시)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구조화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 상장된 상품도 빈번히 거래되지 않는 상품(예 : 상장된 깊은 외가격 옵션, 구조화증권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

(4)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ㅇ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지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ㅇ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 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여부(ex. 근황 문의)
• 투자자금의 성격(ex. 생계자금 해당여부)
•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ex. 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여부)
•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ex. 말투, 기억수준 등 고려)

5)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ㅇ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한다.

ㅇ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6) 녹취제도 및 숙려 제도

ㅇ 회사는 65 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2-2 호

4.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1)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ㅇ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하도록 한다.

ㅇ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ㅇ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두도록 한다.

(3)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ㅇ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두도록 한다.

(4)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ㅇ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5.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1)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자제

ㅇ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한다.

ㅇ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하도록 한다.

(2) 조력자와의 상담(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ㅇ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ㅇ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후모니터링 강화

ㅇ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6. 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ㅇ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유지하도록 한다.

<별지 제 9 호>

청약 철회 요청서(예시)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청약 철회 대상

ㅇ **(투자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ㅇ **(대출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명 :	□ 투자성 상품 ( ) □ 대출성 상품 ( )
1)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	년 월 일
2)계약체결일: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년 월 일

▣ 주의 사항

ㅇ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ㅇ고객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별지 제 10 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예시)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계약체결일 :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참고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안내 사항

ㅇ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ㅇ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별지 제 11 호>

위법계약 해지 관련 통지서(예시)

▣ 통지 대상 고객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회사의 통지 결과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회사의 판단 결과 :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회사의 정당한 사유	
(거절시)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안내 사항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사규관리대장

1. 기본관리사항

사규명	투자권유준칙		
관리번호	8060	소관부서	준법감시실
제정연월일	2009.01.30	시행연월일	2009.01.30

2. 개폐연혁

회차	연월일	개폐내용	비고
1차	2009.01.30	제정	
2차	2010.12.30	개정	
3차	2012.04.02	개정	
4차	2014.05.16	전면개정	
5차	2016.11.01	개정	
6차	2017.03.07	개정	
7차	2018.01.26	개정	
8차	2018.11.01	개정	
9차	2021.05.17	개정	

3. 유권해석

연월일	관련조항	유권해석 내용